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화승 알앤에이(R&A)(이하 이 회사라 칭함)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HWASEUNG R&A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
- 2) 산업용고무제품 제조업 및 매매업
- 3) 조선기자재 제조업 및 매매업
- 4) 금속업 기계가공제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
- 5) 수출입업 및 동수입품 판매업
- 6) 군납업
- 7)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 8) 주택건설 사업
- 9) 특정 및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 10) 주식 및 기타 증권에 대한 투자업무
- 11) 방식장비 제조 및 판매업
- 12) 전기공사업
- 13) 상표권 및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14)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 15) 자회사 포함한 타 회사와의 설비 및 전자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사업
및 상품의 공동개발, 판매사업과 이를 위한 사무지원 사업
- 16) 경영자문, 컨설팅 및 시장조사업
- 17) 전 각호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단, 상기 사업중 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영업은 그 허가를 득한 후에
경영하기로 한다.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 양산시내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서 국내외 각지에 공장,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srn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하며,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사천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하며, 종류주식의 명칭 및 구체적 내용은 정관의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 8조 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 ① 이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는 것으로 하여,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 기재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1항 기재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제1항 기재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1항 기재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제1항 기재 종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위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 기재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8조의 3 (의결권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8조의 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

-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8조의 2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제8조의 3의 의결권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달리 결의하지 않는 이상 상환주식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④ 회사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점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주식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인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 8조의 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

-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8조의 2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제8조의 3의 의결권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가 전환 또는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6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

-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을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고, 전환상환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8조의 2의 이익 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제8조의 3의 의결권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전환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주주만이 전환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전환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등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의 4의 규정을, 상환가액, 상환기간 및 상환절차 등 상환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의3 규정을 각 준용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삭 제>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금오백억원을 한도로 보통주식으로 하고, 사채의 액면총액 금오백억원을 한도로 제8조 2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으로 하며, 전환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오백억원을 한도로 보통주식으로 하고, 사채의 액면총액 오백억원을 한도로 제8조의 2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 집 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 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3 조의 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4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 감 사 위 원 회

제 28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 30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1 조 (이사의 보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1인 이상의 대표이사와 필요한 경우에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에서 공동대표를 선임한 경우 공동대표이사는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 33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3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의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삭 제>

제 35 조 <삭 제>

제 36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7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조의 2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경영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0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0조의 1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에 제38조의 2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⑦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인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⑦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 40조의 3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 41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43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4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5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상법등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할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시행일) 본 정관은 198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규정) 본 정관 제5조의 규정은 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금액의 인상 조치를 취할 때까지 그 시행을 유예한다.
4.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제10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의 규정은 이 정관 개정에 불구하고 상법부칙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5. 본 정관은 1985년 7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1986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1988년 6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8. 본 정관은 1989년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1990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1990년 5월 2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11. 본 정관은 1992년 2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12. 본 정관은 1994년 2월 25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13. 본 정관은 1994년 7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14. 본 정관은 1995년 2월 24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2, 제12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 2,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16. 본 정관은 1998년 2월 27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17. 본 정관은 1999년 2월 26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18. 본 정관은 2000년 3월 17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19. 본 정관은 2001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20. 본 정관은 2002년 3월 15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21. 본 정관은 2006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22. 본 정관은 2009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23. 본 정관은 2012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33조의3, 제37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정관은 2015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25. 본 정관은 2016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개정 시행한다.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 : 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500번지

발기인 : 현 승 훈

주 소 : 부산시 남구 남천동 489의 25번지

발기인 : 현 창 훈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 614의 7번지

발기인 : 현 지 훈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동작동 1의 19번지

발기인 : 성 하 정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07의 21번지

발기인 : 강 민 선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동작동 1의 19번지

발기인 : 김 상 기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 193의 3 극동아파트 2동 504호